

# 전공 선택 규정

개정 2020.04.06

**제1조 (목적)**

이 규정은 계열별로 모집된 학생의 전공선택에 관한 원칙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전공의 배정)**

전공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, 산업체의 인력, 실습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. <개정 2020.04.06.>

**제3조 (전공분류와 선택)**

전공 분류는 계열의 특성에 따라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분류할 수 있으며 학생은 전공이 분류되는 이전 학기에 전공을 선택한다.

**제4조 (전공선택의 방법 및 원칙)** 학생은 계열별로 다음의 과정에 의거 전공을 선택한다.

- ① 각 전공 특성에 관하여 전공설명회를 개최한다.
- ② 학생은 전공이 분류되기 이전 전공설명회를 듣고 전공희망원을 제출한다.
- ③ 계열장은 학생 전공 희망원을 제출받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분류한다.  
<개정 2020.04.06.>
- ④ 전공별 희망자의 수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상담을 통하여 조정한다. <개정 2020.04.06.>

전공희망원			
계열			
학번		성명	
희망전공			
위와 같이 전공희망원을 제출합니다.  . . .			
신청인 성명			①

**제5조 (전공확정통보)**

계열장은 학생의 전공을 확정하여 학생에게 통보한다.

**제6조 (기타)**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0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.